신 탁 계 약 서 전 후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
①~②(생략)	①~②(생략)
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	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
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	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
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	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
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	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
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	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
다.	다.
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	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
투자신탁[채권혼합]	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1	2. 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1
호[주식]	호[주식]
3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	3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
자투자신탁[채권혼합]	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4. 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2	<u><삭 제></u>
호[주식]	
<신 설>	<u>부 칙</u>
	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3월 15일부</u>
	터 시행한다.